보직관리에관한지침

목 차

제1장	총	칙	•••••	•••••	••••••	•••••••	••••••	•••••••	•••••	1
제1조	목	적	•••••	•••••••••••	••••••	••••••	••••••	••••••	••••••	1
제2조	대	상	•••••	••••••	••••••	••••••	••••••	••••••	••••••	1
제3조	적용	-범위	위	••••••	••••••	••••••	••••••	••••••	•••••	1
제4조	정	의	•••••	••••••	••••••	••••••	••••••	•••••	••••••	1
제2장	보격	시관	리	••••••	•••••••	•••••••	••••••	•••••••	••••••	1
제5조	보직	의	구분 "	•••••••	••••••	••••••	••••••	••••••	••••••	1
제6조	보직	자의	의 교육	••••••	••••••	••••••	••••••	••••••	••••••	2
제7조	보직	자의	의 자격	••••••	••••••	••••••	••••••	••••••	••••••	2
제3경	} 보	직지	나에 대 ^학	한 인사기준	Z	•••••••	••••••	•••••••	••••••	3
제8조	보즈	나단/	계 조정	•••••	••••••	••••••	•••••	•••••	••••••	3
제9조	보즈	라자	의 인사	-교류	•••••	••••••	••••••	•••••	••••••	3
제10조	- 연.	고권	<u>비</u> 배치	•••••	••••••	••••••	•••••	••••••	••••••	3
부 :	칠	•••••	•••••			•••••	•••••	•••••	•••••	3

보직관리에관한지침

2012. 1.13 제정(지침제200호) 2012. 7. 4 일부개정(지침제210호) 2012. 7.31 직제규정 개정(규정제970호) 2015.6.18 일부개정(지침제275호) 2015.10.16 일부개정(지침제282호) 2017.12. 7 지침의관리에관한준칙 개정(지침제312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 제2조(대상) 이 지침은 공단 임직원 중 직제시행세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관리직 및 3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교류 및 보직부여에 관하여는 관계 규정 및 다른 지침에서 특별 히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직'이란 직제시행세칙 제2조제3항에 정의된 보직과 위임전결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파트장, 그 외에 이사장이 인정한 임시조직의 장을 말한다.
 - 2. '직무군'이란 유사한 업무 성격을 갖는 보직의 집합을 말하며, 별표1에 따른 본사, 자동차 안전연구원, 지역본부, 교통안전교육센터, 검사소로 구분한다.
 - 3. '단계'란 유사한 수준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갖는 보직의 집단을 말한다.
 - 4. '지방조직'이란 제2호의 직무군 중 본사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제외한 지역본부, 교통안전 교육센터, 검사소를 말한다.
 - 5. '연고권'이란 당일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며, 지하철로 이동 가능한 수도권은 동일 연고권으로 본다.

제2장 보직관리

- 제5조(보직의 구분) ①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 지역본부, 교통안전교육센터의 보직은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5단계로 구분한다.
 - 1. 1단계: 제4호에 따른 4단계 부서 근무(무보직)

- 2. 2단계 : 지역본부 처장, 본사 파트장 및 TF팀장
- 3. 3단계 : 본사 처장 및 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
- 4. 4단계 : 본사 주요 실·처장 및 교통안전교육센터장
- 5. 5단계 : 본사 본부장 및 지역본부장
- ② 검사소의 보직은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5단계로 구분한다.
- 1. 1단계: 제4호에 따른 4단계 또는 제5호에 따른 5단계 검사소 근무(무보직)
- 2. 2단계 :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3급지 검사소장
- 3. 3단계 :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는 3급지 검사소장
- 4. 4단계 : 연간 검사량 10만대 미만의 2급지 검사소장
- 5. 5단계 : 연간 검사량 10만대 이상의 2급지 검사소장
- ③ 각 단계별 세부 보직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6조(보직자의 교육) ① 보직자의 단계별 리더십,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은 교육주 관부서에서 담당한다.
 - ② 교육주관 부서는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직자의 단계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직자의 자격) ① 보직을 주기 위한 자격은 주고자 하는 보직의 이전 단계에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직원을 기준으로 하되, 인사운영 필요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 1. 1단계: 관리2급 또는 기술 3급으로 승진 임용된 자(무보직 근무)
 - 2. 2단계 : 관리2(기술3)급으로 승진 임용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단계 보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 3. 3단계 : 관리2(기술3)급으로 승진 임용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2단계 보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 4. 4단계 : 관리2(기술3)급 이상으로 승진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3단계 보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 5. 5단계 : 관리2급 이상으로 승진 임용된 날부터 4년 이상 경과하고, 4단계 보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 ② 해당 보직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책임성·전문 성에 합당한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 ③ 지역본부, 검사소에 연고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 ④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은 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6.18>
 - ⑤ 인사규정 제3조 제19호에 따른 부패행위자는 감사, 인사, 회계 분야에 보직할 수 없다.<신

설 2015.10.16>

제3장 보직자에 대한 인사기준

- 제8조(보직단계 조정) 임용 가능한 보직 수에 비하여 제7조에 따른 보직 대상자의 수가 많거나 적을 때에는 대상자의 보직 단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보직자의 인사교류) ① 장기근무에 따른 조직침체를 방지하고 보직자에게 다양한 경력 기회를 주기 위해 같은 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인사교류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단계에서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별표1에 따라인접 직무군에 우선 배치한다.
 - ③ 특수한 자격을 소지하거나 6개월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을 마친 직원은 가능한 관련된 직무와 우선 교류한다.
 - ④ 신체장애가 있는 직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보직한다.
- 제10조(연고권 배치 기준) ① 제9조에 따라 교류할 경우 지방조직의 보직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연고권자를 우선 보직한다.
 - ② 비연고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연고권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비연고지 근무기간에 따라 차례로 연고권에 배치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비연고권에서 근무한 직원을 연고권에 배치할 때에는, 처음 보직을 부여받은 직원, 최근 승진 임용된 직원 및 연고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연고권이외의 지역에 배치한다.

부 칙(2012. 1. 13)

이 지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4)

이 지침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2.7.31, 규정 제9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 인 규정 중 지부는 지사로 지부장은 지사장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6.18)

이 지침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16)

이 지침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7, 지침의관리에관한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지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별표 1]

보직경로 (제4조, 제5조 및 제9조 관련)(2012.7.4 개정)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 지역본부, 교통안전교육센터】

직무군 단계	지역본부/ 교통안전교육센터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		검사소	
5	지역본부장		기획본부장, 전략기획실장, 경영지원실장, 도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단계		\Leftrightarrow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	$ \Leftrightarrow $				
	(6)		감사실장 (7)			(1)		
4 단계	교통안전교육센터장		홍보실장, 감사처장, 기획예산처장, 인재개발처장, 도로교통안전처장, 철도교통안전처장,	검사기준처장		연구기획실장		
단계		\Leftrightarrow	미래교통전략처장		\Leftrightarrow			
	(1)		(8)			(1)		
3 단계	안전관리처장, 안전지원처장(서울)	\Leftrightarrow	비서실장, 성과평가처장, 창조혁신처장, 정보관리처장, 운영지원처장, 재정회계처장, 자격관리처장, 교통안전교육차장, 교통안전연구처장, 미래교통개발처, 교통복지처장, 자동차정보처장, 철도승인처장, 철도기술차장, 항공교통안전처장, 항공시험처장	자동차검사처장, 검사기술개발처장, CNG검사처장	\Leftrightarrow	결함조사실장 인증검사실장, 주행평가실장, 첨단안전평가실장 친환경평가실장	\Leftrightarrow	강남검사소장, 성산검사소장, 노원검사소장, 구로검사소장
	(7)		(16)		(4)			
2	안전지원처장,		TF팀장, 파트장, 4단계 부서 근무(TF팀장, 파트장,		2급지	
단계	지사장	\Leftrightarrow		\Leftrightarrow	4단계 부서 근무 (무보직)	\Leftrightarrow	검사소장	
	(14)		_					***
1 단계	지역본부, 교통안전 교육센터근무(무보직) -	\Leftrightarrow	본사 근무(무보직) -	\Leftrightarrow	연구원 근무(무보직)		3~4급지 검사소장	

【검사소】

단계 자동차검사처장, 강남검사소장, 성산검사소장, 결함조시 5단계¹¹) 검사기술개발처장, ☆ 노원검사소장, 구로검사소장 ○증검사 주행평가	
	실장,
(4) 첨단안전평 친환경평	
TF팀장, 파트장, 수원검사소장, 안양검사소장, 4단계 부서 근무 성남검사소장, 서수원검사소장, 4단계 부/의정부검사소장, 고양검사소장,	1
인천검사소장, 부천검사소장, 4단계 ²⁾ ⇔ 해운대검사소장, 창원검사소장, 주례검사소장, 울산검사소장, 이현검사소장, 수성검사소장, 대전검사소장, 광주검사소장	
(16) 본사 근무 성동검사소장, 안산검사소장, 연구원	근무
전구된 경등검사소장, 인간검사소장, 용인검사소장, 남양주검사소장, 서인천검사소장, 제주검사소장, 사하검사소장, 포항검사소장, 달서검사소장, 구미검사소장, 달서검사소장, 유성검사소장, 수한검사소장, 청주검사소장, 충주검사소장, 충주검사소장, 축천검사소장, 북광주검사소장, 여수검사소장, 전주검사소장, 여수검사소장, 선주검사소장 (19)	ΤT
본사 근무 진주검사소장, 거창검사소장, 연구원 안동검사소장, 경주검사소장, 경주검사소장, 원주검사소장, 강릉검사소장, 홍성검사소장, 목포검사소장, 순천검사소장, 군산검사소장, 익산검사소장, 인상검사소장, 문경검사소장, 동해검사소장, 태백검사소장, 정읍검사소장, 남원검사소장) ⁵⁾	근무
1단계 본사 근무 <u>4~5 단계 검사소 근무(무보직)</u> 연구원	근무

1) 5단계 : 연간 검사량 10만대 이상 2급지 검사소장

2) 4단계 : 2급지 검사소장

3) 3단계 : 배출가스 검사 시행 3급지 검사소장

4) 2단계 : 3~4급지 검사소장

5) ()는 4급지 검사소장

【검사소(지역별)】

[검사소(시역별)]												
	서울		경인		부산경남		대구경북		중부		호남	
	검사소	급지	검사소	급지	검사소	급지	검사소	급지	검사소	급지	검사소	급지
	성산자동차검사소	2										
5단계	강남자동차검사소	2										
	노원자동차검사소	2										
	구로자동차검사소	2										
			부천자동차검사소	2	창원자동차검사소	2	수성자동차검사소	2	대전자동차검사소	2	광주자동차검사소	2
			안양자동차검사소	2	해운대자동차검사소	2	이현자동차검사소	2				
			성남자동차검사소	2	울산자동차검사소	2						
4단계			수원자동차검사소		주례자동차검사소	2						
41/1			고양자동차검사소	2								
			서수원자동차검사소									
			인천자동차검사소	2								
			의정부자동차검사소	2								
	성동자동차검사소	3	안산자동차검사소	3	사하자동차검사소	3	구미자동차검사소	3	신탄진자동차검사소	3	북광주자동차검사소	3
			서인천자동차검사소	3	제주자동차검사소	3	포항자동차검사소	3	춘천자동차검사소	3	전주자동차검사소	3
3단계			용인자동차검사소	3			달서자동차검사소	3	충주자동차검사소	3	여수자동차검사소	3
06/11			남양주자동차검사소	3					청주자동차검사소	3		
									천안자동차검사소	3		
									유성자동차검사소	3		
2단계					진주자동차검사소	3	경주자동차검사소	3	강릉자동차검사소	3	목포자동차검사소	3
					거창자동차검사소	3	안동자동차검사소	3	원주자동차검사소	3	순천자동차검사소	3
							문경자동차검사소	4	홍성자동차검사소	3	군산자동차검사소	3
							영주자동차검사소	4	동해자동차검사소	4	익산자동차검사소	3
									태백자동차검사소	4	정읍자동차검사소	4
											남원자동차검사소	4
1단계	4~5단계 검사소 근무(무보직)											